
휴대전화

전자우편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김현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

제목: 서대문 경찰서 사건번호(2026-00218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고소인: 납세자. 김명호

피의자: 서울은평 경찰서장 김현환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한다

1. 고소인 자격: 피의자 김현환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은평경찰서 부설주차장 폐쇄 및 청사내 불법 건축물 설치에 세금 전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2.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 이유(첨부자료)

(1) "기존 부설 주차장은 바리케이트 설치해서 이용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용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주차장법 위반 아니다"에 대하여

한마디로 얼토당토아니한 횡설수설로 법조문 이해 못하는 돌대가리 경찰의 무식함 드러낸 개소리

피의자 김현환은 바리케이트 설치하여 부설주차장 이용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①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의무"를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②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에 의해, 멸정한 부설주차장을 "불법 건축물"로 만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2) "고소인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한, 청사 현관문 왼쪽에 설치된 커피, 빵 등 '제공 시설'은

은평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서 '완제품 취식에 문제없다'고 확인하였으니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에 대하여

(건축과가 아닌) 식품위생팀이 완제품 취식에 문제없다고 한 것이 불법 건축물 여부와 무슨 관계 있냐?

이걸 답변이라고 한 김재훈이 지능범죄수사팀 경감이란단.

이런 돌대가리들이 범죄 수사한다고 설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첨부 파일

hhkim3.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5-0259150
접수일	2026-05-07 15:39:45
담당자(연락처)	김수임 (02-335-8455)
처리에정일	2026-05-1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